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제27차 회의보고서

이 회 정/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 언

국가간 식품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한 나라의 식품관리정책은 제외국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간 표기기준의 검토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식품의 분야별 주체인 정부, 산업체, 소비자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WTO/SPS 협정에 의해 CODEX 규정이 국제간 분쟁발생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동 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시행중인 규정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중인 사안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하여 196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1999년 4월 제 2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식품에 적용할 표기규정의 초안작성
-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의 규격안, 실행규범 및 지침서에 작성된 표시 관련 특정규정안의 검토, 필요시 개정 및 인증
- 총회가 부여한 특정 표시문제의 검토

- 특히 강조표시(claims) 및 허위표시를 고려하여 식품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의 검토

II. 제 27차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이하 CCFL) 제 27차 회의는 1999년 4월 27일 -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Dr. Anne Mackenzie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46개 회원국 및 30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42명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 개최전 24, 26일 양일간에 걸쳐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에 대한 특별 작업단 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 결과는 회의 최종보고서 ALINORM 99/22A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2. 의제 목록

의제 1. 의제채택

의제 2.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들
 의제 3. CODEX 규격 중 표시규정 검토
 의제 4.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안

5.1항. 첨부 2에 새로운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조건 및 개별국가의 물질 목록 설정을 위한 기준

축산분야

의제 5. 과민증유발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안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의제 6.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의제 7.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분류명)

의제 8. 영양표시 자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
 의제 9.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의제 10.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 초안

의제 11.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의제 12. 기타 사업, 향후 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3. 주요 토의내용

(1) CODEX 규격중 표시규정 검토

(Consideration of Labelling Provisions in Draft Codex Standards)

유 및 유제품 분과위원회

유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관한 일반 규격안 (Draft General Standard for the Use of Dairy Terms)

제안사항(제안국 또는 기구)	제안사항에 관한 논의내용	결 론
- 각 조항의 제목을 4.2 우유 용어 사용, 4.3 CODEX 식품규격 가운데 유제품 용어 사용, 4.4 환원유제품 용어 사용, 4.5 혼합유제품 용어 사용으로 수정(영국)	동 의	제안내용으로 수정
- 4.1.2항에 대해 채유된 동물종의 표시는 요구되어서는 안됨(인도)	-	원문유지
- 4.3.3항에 대해 성분조절 제품의 경우 성분조절 기준에 관한 요구조건을 삭제(캐나다)	-	원문유지
- 두유와 같은 기타식품(전통식품등)에 유와 관련된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4.6.1 항의 수정(말레이시아)	- 본 규격은 CCMMMP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이므로 수정없이 그대로 상정 - 4.6.2항이 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전통제품의 판매를 허용함	원문유지
- 4.6.3항에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의 4.1.1.3항에 정의된 성상명 및 4.1.1.2항에 정의된 원재료목록은 제외함”의 내용의 주석을 첨가(영국)	-	제안내용으로 수정

유제품 규격중 공통 표시규정
(Common Labelling Provisions in Milk Products Standards)

제안사항(제안국 또는 기구)	제안사항에 관한 논의내용	결 론
- 유지방 함량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경우에 표시하여야 함(덴마크)	-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유지방 함량 표시는 규격의 성질에 따라 좌우됨	원문유지
- 기준이 serving으로 제시된 경우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표지에서 규정한 양의” serving으로 표시하여야 함(캐나다)	-	- 제안내용에 동의하며 일관된 규격을 위하여 serving당 유지방 표시 및 유단백 표시와 관련한 모든 조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개별 규격중 표시규정(Labelling Provisions in Individual Standards)

제안사항(제안국 또는 기구)	제안사항에 관한 논의내용	결 론
- 지방이 95% 이상인 버터제품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를 혼혹할 수 있으므로 삭제(헝가리)	- 버터와 지방함량이 비제한적인 유지방 제품은 차이가 있고 본 규정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	원문유지

생과채류 분과위원회

파인애플 규격 개정안(Draft Revised Standard for Pineapples)

제안사항(제안국 또는 기구)	제안사항에 관한 논의내용	결 론
- 파인애플이 일반적으로 포장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포장식품의 표시에 언급되어 있는 일반적인 용어의 수정을 제안(CCFFV)	-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ODEX STAN 1-1985, Rev. 1-1991)의 규정에 부가적으로 다음과의 특별규정이 적용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논의내용으로 수정

□ 당류 및 벌꿀 분과위원회

당류 규격안(Draft Standard for Sugars)

제안사항(제안국 또는 기구)	제안사항에 관한 논의내용	결 론
- 원재료 목록 가운데 전분의 최대기준의 삭제 (미국)	- 과다한 양의 전분 첨가를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	원문유지
- 고결방지제에 관한 두 번째 문장 삭제(∵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가운데 첨가물 분류명에 관한 조항에 의해 적용됨)	-	제안내용으로 수정

**(2)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
에 관한 지침서 안**

(Draft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1) 경 과

- 제26차 회의에서 본 지침서(안) 가운데 축산분야 및 각국별 허용가능 물질 설정을 위한 조건 분야(5.1항)는 1년간 각국의 의견 수렴을 위해 6단계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8단계로 상정하기로 하였음.

2) Working Group 토의 내용

<5.1항. 첨부 2에 새로운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조건 및 개별국가의 물질 목록 설정을 위한 기준>

- 본 기준을 결정하는데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개발도상국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원국들의 경험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5.1항은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해당 국의 재량하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
- 전문(前文)의 내용 가운데 공통요소들을 통합함

○ 유기생산방법에서 토양의 비옥화 및 작물 보호에 사용되는 물질 및 유기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관련된 기준은 보류함

<축산분야>

- 지침서 전반에서 “동물(animal)” 용어 대신에 “가축(livestock)”으로 사용하기로 함.
- 현 단계에서 본 지침서는 식용으로 사육되거나 식품으로 생산되는 소(물소 포함), 돼지, 염소, 말, 가금, 꿀벌에만 적용하기로 함.
- 수중생물에 관한 기준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 축산분야에 있어 상이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 지침서를 재구성함.
 - 가축생산의 일반원칙
 - 가축원 및 유기생산에 있어 다양한 종들의 전환에 필요한 기간
 - 가축 영양
 - 유기생산식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된 질병관리 조치들
 - 수송 및 도축과정중 가축 취급을 포함한 축산과 관련된 실행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 축사 및 방목 조건
- 비료관리
- 기록 및 확인
- 소비자가 양봉제품 표시에 속지 않도록 꿀벌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요구 조건

3) 본회의 토의 내용

<5.1항. 첨부 2에 새로운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조건 및 개별국가의 물질 목록 설정을 위한 기준>

- 당 분과위원회는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CODEX 권고 및 모든 관련자들의 참여를 반영하고 있는 5.1항의 마지막 문장을 언급함.
- IFOAM, RAFI의 지지하에 CI는 소비자 선택 및 윤리적 문제와 같은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는 문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몇몇 대표단 및 EC는 본 지침서의 포괄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함.
- IFOAM은 모든 관련 분야가 본 지침서의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지침서의 완성은 매우 확고하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 및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는 의견과 정부당국은 자국 대표단에 관련업자들의 참석을 촉진 해야 한다고 제안함.

<축산분야>

- 당 분과위원회는 유기축산생산시스템내에서의 투입에 관한 기준은 Annex 1의 영양 및 질병관리의 특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동의함.
- 한국의 지지하에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소규모 농장은 본 지침서의 모든 규정에 따른 가축생산 조건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

다는데 대해 Working Group의 의장은 이 문제는 Working Group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특정(전통적인) 농업을 언급하는 세 번째 단락에 의해 적용된다고 밝힘.

4) 결과

- 본 지침서의 5.1항은 총회 채택을 위해 8단계로 상정하기로, 축산분야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 위해 6단계로 회부하기로 함.

(3) 과민증유발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안(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that can Cause Hypersensitivity
(Draft Amendment to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1) 경과

- 본 권고안은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표시를 위하여 기존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 26차 회의에서 본 권고안 가운데 항상 표시되어야 하는 원재료 목록에 관한 부분은 8단계로 상정하기로 한 반면, 25% 규칙에 관한 4.2.1.3항은 5%를 팔호로 하여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6단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현행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CODEX 일반 규정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된 복합원재료의 경우 원재료목록란에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최종제품에 25% 이하 함유된 복합원재료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과민증유발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이 기준을 25%에서 5%로 낮추는 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수렴

2) 토의 내용

- 25%로 유지하자는 입장
 - 5%로 낮추는 것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음
- 5%로 낮추자는 입장
 - EC는 EC Directive(Directive 79/112)에 따라 25% 이하로 존재하는 복합원재료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개정을 고려중이며 5%로 낮추는 안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
- 모든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하자는 입장
 - 원재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중요하므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표시가 요구되나 현실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체안으로 5%로 낮추는 것도 수용가능함
- 결과적으로 당 분과위원회는 5%로 낮추는 안이 과민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지만 좀더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본 규정은 과민증을 유발하는 원재료 목록과 함께 항상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론함.

3) 결 과

- 5%의 팔호를 없애고 개정안을 제 23차 CODEX 총회 채택을 위해 8단계로 상정하기로 함.

(4)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Biotechnology)

1) 경 과

- 제 26차 회의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정의 부분(2항) 및 알러겐에 관한 규정(4.2.2항)은 총회 채택을 위해 5단계로 상정하였으며, 표시부분(5항)은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다시 회부하였음. 본 회의에서는 표시부분(5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본 의제에 관한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논의되어 왔는데 즉, 미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생명공학 응용제품의 경우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EU등은 모든 생명공학 응용제품에는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토의 내용

- GMO 식품표시대상이 3가지로 구분되어 의견이 개진됨.
 1. 성분, 사용방법, 영양가등이 기존식품과 상당히 다른 경우에만 표시
 - GMO 함유 또는 기원 식품의 표시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서 생산방식에서 기원한 이러한 구별은 GMO를 이용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여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미국)
 -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CODEX 표시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함(IFCGA, CIAA, ASSINSEL, CRN)
 - CODEX 결정의 근거에 있어서 과학 및 위해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생명공학과 같은 특별한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이러한 정보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어떠한 부가적인 보증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아르헨티나)
- 2. 모든 GMO 및 GMO 기원식품 중 기준식품과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단,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단백질 또는 DNA를 함유하지 않은 경우는 표시대상이 아님
 - EC의 현 규정을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건강 및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

-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단백질 및 DNA를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표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모든 GMO 및 GMO 기원 식품중 더 이상 기존의 식품과 동등하지 않은 제품은 표시가 요구됨.
- EC의 이러한 입장은 다수의 대표단에 의해 지지
3. 모든 GMO 포함 또는 기원식품에 표시
- 모든 GMO 포함 또는 기원 식품에 대한 표시는 건강문제(특히 알러겐과 관련된) 및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주기 위해 의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CI, IACFO).
 - CI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GMO가 유기생산방식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기 농부들에게는 GMO 제품의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함(IFOAM, RAFI).
 -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윤리적인 문제로써 모든 GMO 포함 또는 기원 식품에 대한 의무표시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식품표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체안으로 EC의 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노르웨이).
- 본 권고사항을 생명공학으로는 생산되지 않은 신식품(novel food)에 적용하는데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일부 대표단은 모든 식품에 대해 성분, 영양가, 기타 다른 특성이 변화되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생산방식에 관계없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대표단은 본 권고는 GMO로 생산된 식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지함.
- 당 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에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표시에 사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몇몇 대표단은 실질적 동등성 개념이 안전성 평가에는 사용되고 있으나, 표시문제에 있어서 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 당 분과위원회는 실질적 동등성은 기존 식품과 동등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동등성 개념이 표시의 목적으로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논의하자는 캐나다의 제안에 동의함.
- 3) 결과
- 당 분과위원회는 캐나다를 주제로 한 Working Group이 본 권고초안을 재작성하도록 본 권고초안을 다시 3단계로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Working Group은 본 권고초안의 수정판을 준비할 것임.
- (5)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분류명)
(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Class Names))
- 1) 경과
- 분류명 개정초안에 관한 규정은 CCMMMP (Codex Committee on Milk and Milk Products)가 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당 분과위원회의 작년 회의에서 본 개정초안의 두가지 안에 관해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회람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두가지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단백제품과 유단백을 분리
 - 유단백 하나로 통합

2) 토의 내용

- 2개의 분류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류명의 제목을 “유단백/유단백제품”으로, 유단백질의 최대기준 “30/35%”를 괄호로 하는데 동의함.

3) 결 과

- 본 개정초안을 총회 채택을 위해 5단계로 상정하기로 동의하고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본 개정초안을 CCMMP에 회부하여 조언을 구하기로 함.

(6)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

(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1) 경 과

- 제 25차 회의에서 지침서의 3.2조를 개정하여 영양표시를 할 경우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을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 26차 회의에서 영양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 의무표시의 필요성에 관한 다각도의 의견이 있었음. 또한 당 분과위원회는 CCNFSDU (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에 조언을 요청한 결과 이러한 영양소들의 의무표시가 공중위생상 필요한지 논의되었으나, 아직 까지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함.
- 현재의 지침서에서는 영양소 표기시 열량,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 지방함량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이에 대해 본 제안은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 표시도 의무조항으로 하자는 것임.

2) 토의 내용

- 3가지 의견이 개진됨

1. 의무표시 영양소를 열량,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 지방에서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 소비자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임.
 2. 의무표시 영양소를 현행과 같이 열량,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 지방으로 두자는 의견
 - 의무표시 필요성 여부는 각국의 공중보건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국이 결정하여야 함.
 3. 포화지방, 당류, 섬유소, 나트륨과 관련한 영양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만 의무표시로 하자는 의견
 - 이 방법은 소비자 정보요구와 산업체의 부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융통성을 제공할 것임(EU).
 - 많은 대표단은 이 제안이 좋은 결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EU의 안을 지지함.
- 비타민 및 무기질의 “상당량(3.2.5항)”의 개념 및 이의 각주에 관한 논의
 - 5%를 10% 내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제안함(호주 및 EC).
 - 이에 다른 대표단은 5%를 10%내지 15%로 상향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급원의 표시가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제안을 반대함.
 - 당 분과위원회는 본문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결론적으로 당 분과위원회는 3.2.1.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 “단백질, 이용가능한 탄수화물(예를들면, 식이섬유소를 제외한 탄수화물), 지방의 함량 및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나트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해 영양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나트륨의 함량”

3) 결 과

- 본 개정초안을 총회 채택을 위해 5단계로 상정하기로 함.

(7)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Health Claims)

1) 경 과

- 제 26차 회의에서 본 의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각국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 분과위원회는 본 의제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3단계로 다시 회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동시에 CCNFSDU에 건강강조표시에서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강조표시의 정의를 마련하는 것이며,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 할 과학적 근거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이 기준을 중요한 안건으로 지속하기로 하여 프랑스, 미국등이 협력하여 다음 회의에 검토할 작업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함.
- 이 권고초안은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지침서에 건강강조표시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것임.

2) 토의 내용

- 본 권고초안의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
 - 건강강조표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건강은 균형된 식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반대(노르웨이, CI)
 - 본 지침서 설정은 각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 분과위원회의 지침서 설정 작업에 반대
 - 국가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지침서를 위한 문서를 마련하자고 제안(프랑스)

- 위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본 권고초안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이 비공식적인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프랑스가 기제출한 권고초안을 기초로 광범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안이 마련됨.
- 새로운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강조표시의 정의는 향상된 기능에 관한 표시(Enhanced Health Claims) 및 질병위험의 감소에 관한 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로 세분되었고, 표시조건으로 전체식사(Total Diet)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섭취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은 금지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Working Group을 주재하였던 F. E. Scarborough은 새로 마련된 초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 전에 Working Group 소집을 제의함.

3) 결 과

- 이번 회의 기간동안 개정된 권고 초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수렴과 다음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해 다시 3단계로 회부하는데 동의함.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프랑스 및 영국의 협력하에 미국과 캐나다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을 회의 바로 직전에 개최하는데 동의함.

(8)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Recommendations for Sports and Energy Drinks)

1) 경 과

- 제25차 회의에서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관한 권고를 설정하자는 남아프리카의 제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진행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음. 제22차 총회에서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 제품에서는 주요문제가 강조표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본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함. 아울러 이 작업을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와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와 협조할 것을 당 분과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

- 제 26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가 문서를 재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함.

2) 토의 내용

- 권고초안에 대한 설명(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는 개정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며, 함유 가능한 전해질 목록이 GSFA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에 수재되어 있으므로 “isotonic” 정의 가운데 전해질 목록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한 권고안의 수정을 제안함.
- 이에 당 분과위원회는 스포츠음료가 GSFA의 식품분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함.

- 권고초안에 대한 의견

◆ “고열량” 강조표시에 관한 의견

- 강조표시는 특정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
- “고열량” 강조표시는 액체 및 고체식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뉴질랜드).
-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 의하면 비교식품간에 열량가의 상대적인 차이가 최소 25%이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고열량” 강조표시의 기준인 190KJ이 너무 낮다는 의견

◆ “무알콜” 강조표시에 관한 의견

- 당 분과위원회는 본 작업에서의 주요한 문제는 열량기준 및 제품의 사용 목적이므로 무알콜은 무관하다며 만

약 논의가 필요하다면 모든 식품 및 음료에 적용되는 강조표시로서의 무알콜 기준이어야 한다고 결론함.

◆ 본 작업을 CCFL이 지속해서는 안된다 는 의견

- 스포츠음료는 CCNFSDU가 열량음료는 건강강조표시의 문제로서 CCFL이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함(CI).
- 문서 내용중 정의 및 육체적 운동을 하는 동안 소모되는 영양소 및 전해질 기준에 관한 내용은 CCNFSDU에서 더 논의되어야 함(스위스, 뉴질랜드).
- 스포츠 음료는 특정 인구집단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별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이므로 CCNFSDU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에너지 음료 역시 논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개진됨.
- 몇몇 대표단은 1.2항에 언급한 건강에 좋지 않은 효과를 주는 물질들이 에너지 음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표명하면서, 이는 CODEX 작업으로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몇몇 대표단은 카페인 기준에 관한 논의는 CCNFSDU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본 작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 ISDC 및 ITIC는 강조표시 정의와 관련한 어떠한 규격도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음료는 특별용도용 식품이 아니므로 CCNFSDU에 회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함.

○ 결론적으로 당 분과위원회는

- “무알콜” 및 “isotonic/hypertonic/hypotonic”의 정의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결과

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한 문제는 특별용도용 식품으로써의 스포츠 음료에 대한 정의 및 고열량 강조표시하는데 동의함.

- 이러한 문제들은 CCNFSDU가 고려하여야 하며,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CCFL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함.
- 그러나 당 분과위원회는 CCNFSDU의 조언이 있을 경우,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서 또는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과 같은 CCFL의 권한 내에서 본 작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3) 결 과

- 당분간 본 권고초안의 논의를 계속하지 않기로 하고 “스포츠음료”가 특별용도용식품 인지 아닌지의 여부 및 “고열량”에 관한 강조표시의 조건에 관한 CCNFSDU의 조언이 있은 후에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함.

(9)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Use of the Term “Vegetarian”)

1) 경 과

- 제25차 회의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이 여러가지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기로 결정함.
- 제26차 회의에서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일반 지침서는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작업의 범위를 제품의 표지에 사용되는 강조표시에 대한 정의 설정으로 한정하기로 함. 또한 남아프리카가 인도의 협조로 문서(CX/FL 98/12)를 재작성하기로 한 바 있음.

2) 토의 내용

○ 권고초안에 대한 설명(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가 마련한 권고 초안(CX/FL 99/11)을 문서로 기 제시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권고 초안에 제시된 vegetarian/vegan의 두가지 분류 대신 ovo-lacto vegetarian/lacto vegetarian/ovo vegetarian/vegan의 네가지 분류를 제안함.

○ 권고초안에 대한 의견

- 종교적인 문제 및 문화적 관습 때문에 인도 및 몇몇 아시아 국가의 경우 “채식주의자”는 달걀을 먹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남아프리카가 제안한 새로운 안에 동의한다고 함(인도, 태국).
- “채식주의자”는 식물기원의 원재료로 제한되어야 함(스웨덴).
- ovo-lacto vegetarian은 lacto vegetarian 및 ovo vegetarian의 정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lacto-vegetarian/ovo-vegetarian/vegan의 세가지 분류를 제안 함(멕시코).

- 벌꿀, 치즈의 rennet, fungi와 같은 식품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본 개정초안의 내용을 CODEX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서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천함(스위스).

3) 결 과

- 본 권고초안의 재작성 및 다음 회의에서 더 많은 의견 및 논의를 위해 다시 3단계로 회부하기로 함.

(10) 기타 사업, 향후 작업 및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Other Business, Future Work and Date and Place on Next Session)

□ 기타 사업

- 미국은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가 강조표시에 관한 일반지침서에 의해 적용되기는 하나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CRD 9에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를 논의하려는 새로운 작업을 제안함.
- 몇몇 대표단과 IACFO는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는 이미 일반표시 규정에 의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부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제안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당 분과위원회는 본 제안을 다음 회의에서 토의 문서로서 더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재작성하도록 하도록 함.

□ 향후 작업

-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안(축산분야)
 - 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 -분류명(유단백)
 -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안
 -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표시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에 관한 토의 문서
-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 당 분과위원회 제 28차 회의는 2000년 5월 8-11일 오타와에서 개최키로 잠정 확정함.

III. 결 언

이번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의제는 역시 「생명공학 응용식품 표시」였다. CODEX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관한 입장은 크게 2가지로 개진되어 미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EU는 모든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의제 진행 상황이 더디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문제의 중요성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조만간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CODEX에서도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 개최전에 「생명공학 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특별 작업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 작업단에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어떤식으로든 권고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고 선택할 권리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자, 산업체의 요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CODEX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간 합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관한 특별 작업단 회의에서 교환되는 각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의제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규정에 일치할 경우 모든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EU등은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를 할 경우 식품은 약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에 건강관련 표시를 한 제품의 수가 상당량 존재하고 식품교역의 증가로 인한 외국상품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입장이다. 이번 CODEX 회의에서 미국 주재로 희망국들이 모여 새로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초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내년에 특별 작업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두가지 의제가 초기 수준이기는 하지

만 모두 특별 작업단이 마련될 계획이므로 이를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약어

CIAA 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
CI Consumers International
CRN 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
IACF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

ASSINSE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ant Breeders
IFCG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wing Gum Associations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SDC International Soft Drink Council
ITIC International Toxicology Information Centre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